

인권정보자료실
SAf1.14.1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1. 경과 및 평가

자료 모음 2. 법안들

SAf1.14.1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2003년 9월~12월)

자 료 모 음

上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2003년 9월 ~ 12월)

자료 모음 1. 경과 및 평가

- 1) 2003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경과
- 2) 2003년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 운동 약평(이주영)

2001년 추진되다 무산된 테러방지법안은 2003년 8월 재추진됐다.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 함께 했던 인권·사회단체들이 2003년 9월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을 결성해 활동을 벌였다.

11월 14일 국회 정보위원회를 통과해 법사위에 상정된 테러방지법안은 인권, 사회단체들의 강한 저항 속에 더 이상 국회에서 논의되지 않았다. 16대 국회 회기를 얼마 남기지 않은 상태여서, 테러방지법안은 일단 16대 국회에서는 자동 폐기될 전망이다.(2004. 2. 10)

<2003년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경과 보고>

2003년

- 8월 18일 : 국회 정보위 김덕규 위원장, 일간지 인터뷰에서 “심의를 중단해 온 테러방지법안을 새로 수정해, 올 정기 국회 안에 입법 처리하도록 추진 중” 밝혀
- 9월 초 : 수정안은 국정원과 사전 협의를 거친 것으로 확인돼
- 9월 초 ~ 국정원, 일부 시민단체, 국가인권위원회, 대한변협 등을 찾아가 테러방지법 수정안에 대한 설명 작업
- 9월 18일 : 국회 정보위 장세훈 조사관, “테러방지법안에 대해 여야 협의 중이며 국정감사가 끝나는 10월 중순 이후 법안 처리가 가능할 것”이라고 밝혀
- 9월 22일 : 2001년부터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를 위해 함께 했던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 행동’ 다시 구성하고 테러방지법 입법 재추진 막기로 결의.
- 9월 30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주최 “테러방지법 제정 시도 중단하라” 기자회견 및 토론회 개최
- 10월 20일 : 김덕규 정보위원회 위원장 면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전달
- 10월 22일 : 한나라당 정보위 간사 정형근 의원 면담,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 전달
- 10월 22일 : 국가인권위원회,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서 채택
- 10월 24일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국가인권위원회 의견서 환영 논평 발표
- 10월 24일 : 유엔 난민고등판무관실(UNHCR) 한국 사무소 : 테러방지법안 8조 외국인 출입국 규제에 관한 검토 의견 국회 전달
- 10월 28일 : 국가인권위,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의견서 국회 전달
- 10월 31일 :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국회 정보위원회에 공청회 일정 연기 및 찬반 토론자 동수로 할 것을 요구하는 공문 발송
- 10월 31일 : 국회 정보위, 일정 연기 불가, 테러방지법 반대 토론자 1인 추가 가능 통보
- 10월 31일 : 새사회연대, ‘국정원과 국회는 테러방지법 제정 음모를 당장 멈춰라’ 성명 발표
- 11월 1일 : 한겨레신문, ‘왜냐면’ 란에 테러방지법 반대 취지 글 기고(이계수 교수)
- 11월 3일 : 테러방지법안 심사를 위한 국회 정보위 공청회 개최(4인협의체 주최-김덕규, 정형근, 함승희, 홍준표)
- 11월 4일 : 국회 공청회에 대한 논평 발표, 국회, 유관 정부부처, 언론, 사회단체에 배포
- 11월 5일 : 새사회연대 이창수 대표, 함승희 의원실 방문(안정상 보좌관 만남) : 함승희 의원실 입장 : 인권침해가 있는 부분은 다 없애되, 테러방지법은 제정한다.
- 11월 6일 : 민가협 어머니들, 김덕규·정형근·홍준표 의원실 방문(보좌관들과의 만남) : 김덕규 의원실 이준 보좌관 : 반발에 부딪쳐 수정안을 준비 중이다.
- 11월 6일 : 국회 앞 국민은행 마당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집회 개최

(발언 : 민가협 서경순 어머니, 미국 평화운동가 새라 플라운더스, 인권실천시민연대 이효진, 진보네트워크센터 장여경, 이관복 선생)

- 11월 7일 : 문화일보 "국정원 대테러센터 필요없다" 장주영 변호사 글 게재
- 11월 6일 이후 성명 발표한 단체 : 민주노동당, 민주노총, 민중연대, 전쟁을 반대하는 여성연대, 인도주의실천의사협의회, 사회당, 한국전쟁전후 민간인학살 진상규명 범국민위원회, 조국통일범민족연합 남측본부, 한국동성애자연합, 유가협, 인권운동사랑방, 진보네트워크센터, 아시아노조연대회의, 사회진보연대, 민가협, 대전포럼(이주노동자지원단체연대), 외노협, 울산인권운동연대, 다산인권센터
- 11월 10일 :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한나라당 홍준표 의원, 민주당 함승희 의원, 열린우리당 김덕규 의원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공동 발의/ 기존의 한나라당 정형근 의원 수정안, 민주당 수정안 철회
- 11월 12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공동행동, 테러방지법안 수정안 입수 및 회람
- 11월 13일 : '테러방지법안 심의 즉각 중단하라' 성명 발표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실들에 성명 전달, 한나라당-민주당사 앞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집회 (참석 : 민가협, 민변, 민중연대, 사회진보연대, 새사회연대, 안산노동인권센터, 인권운동사랑방, 천주교인권위원회, 평화인권연대 등등)
- 11월 14일 : 테러방지법안, 국회 정보위 위원 전원 찬성으로 통과.
- 11월 14일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이 법안을 당론으로 확정하기로 했다고 보도됨
- 11월 14일 : 인권활동가 9인, 국회 본청 앞 테러방지법심의 중단 촉구 시위, 이후 연행됐다 풀려남
- 11월 15일 : 파병 반대 집회에서 공동으로 서명 작업 진행
- 11월 17일 : 열린우리당 규탄 성명 발표 및 당사 항의 방문 : 14일 정책위원회에서 수정안을 당론으로 정한 것에 대해
- 11월 18일~25일 : 국회의원 찬반 질의 및 의견 취합
- 11월 18일 : 국회의원 면담 진행 (천정배, 김근태)
- 11월 19일 : 국회의원 면담 진행(원희룡), 조순형 의원에게는 의견서 전달, 전화 통화
- 11월 19일 : 열린우리당 정책위원회, 현 법안은 여러 문제가 있어 국회 법사위 통과를 막겠다는 방침 정함.
- 11월 19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각계 및 국회의원 기자회견 진행
- 11월 19일 : 청와대 면담
- 11월 19일 : '공동행동', 열린우리당의 방침 환영 논평 발표
- 11월 20일 : 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집회/반인권의원 선포 대회 개최
- 11월 21일 : 국정원장 항의 방문
- 11월 24일 : 고영구 국정원장이 국정원 고위 간부 10명과 함께 열린우리당 지도부 만나 연내 입법 처리 협조 요청을 함.
- 11월 24일 : 법무부, 테러방지법안 입법 반대 입장 표명
- 11월 24일 : 대한변호사협회,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 제출

- 11월 24일자 : 경향신문 (시론) 참여연대
- 11월 25일 : '공동행동', "국정원 테러방지법에 왜 이렇게 사활을 거는가, 열린우리당은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를 당론으로 정하라!"는 내용의 긴급 성명 발표
⇒ 김근태, 최용규, 천정배에게 다시금 입법의 문제점에 대해 전화로 설명함(민변)
- 11월 27일 : 테러방지법과 집시법 개악 사망 선포식
- 11월 28일 : 경인방송(i TV) 열린 토론 : 패널 - 인권운동사랑방, 참여연대 방청 - 민가협, 민변
- 11월 30일 : 이라크 현지에서 한국인 노동자 2명 피격 사망.
- 12월 1일 : 이라크파병반대비상국민행동, 평화네트워크 등 '테러 원인 파병결정 철회하라'는 요지 성명 발표.
- 12월 2일 : 정부, 대테러대책위원회 열어 테러대책 마련, 그 중 하나로 국회에 테러방지법의 연내 제정을 협조 요청하기로 함.
- 12월 4일 : 테러방지법 입법 및 이라크 파병 강행 규탄 집회
- 12월 8일 : 시민의 신문 '돈화문 칼럼' -인권운동사랑방
- 12월 8일 : 한겨레 '왜냐면' 테러방지법, 괴물의 탄생/ 참여연대
- 12월 10일 : 테러방지법안, 집시법 개악안 저지 집회
- 12월 10일 : 의견서, 법사위 의원들에 배포, 심규철, 최용규 의원 면담
법사위 논의 과정에서 국정원이 마련한 안으로 다시 수정안 만들어짐.
- 12월 10일 법안심사제2소위에서 논의 : 최용규 의원은 당시 회의자리에 없었음.
① 용어 : '대테러' ---> 테러대책 : 대테러란 용어가 과격하게 비쳐져서 바꿨다고 함.
내용 상의 변화를 주는 것 아님.
② 제11조(특공대의 출동)
1항에 테러대책센터의 장이 테러가 발생하거나 발생이 예상될 경우 특공대 출동을 요청할 수 있다는 요지의 내용을 다시 삽입하고, 현재 1항이 2항, 2항이 3항으로 하나씩 밀림.
2항은 '출동을 요청받은' ...소속 기관의 장은.....
내용적으로 보자면, 테러대책센터의 장이 출동을 요청할 수 있고,
2항에서 요청을 받은 소속기관의 장(즉, 국방부장관, 경찰청장, 해양경찰청장 등)이 요청에 대해 판단을 해서 특공대를 출동시킬 수 있고, 즉시 대책회의 의장과 테러대책센터장에게 통보하게 함.
③ 국정원 산하에 대테러센터를 두고 기획, 조정하게 하는 문제의 위헌성에 대한 논의 여부?
논의가 됐으나, 정보수집과 기획 기능을 할 수 있는 곳은 현실적으로 국정원 밖에 없다는 판단 속에 법사위 전문위원실에서는 소속을 국정원으로 하는 것으로 그대로 두었고, 이제 자신들의 손은 떠난 상황이라고 말함.
- 12월 11일 : 500회 목요일집회 : 테러방지법안 제정 반대 특별 결의안 발표
- 12월 11일 : 국회의원실 면담, 법사위 심사 중인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의견서 전달
국회의원 중 김기춘 위원장, 최연희 등 만남
- 12월 12일 : 열린우리당, 정책의총에서 천정배 의원이 현재 테러방지법안의 논의 상황에 대해

보고했고, 테러대책센터를 국정원 산하에 두는 것에 대해 반대한다는 입장을 당 소속 의원들 사이에서 공유했다고 함.

· 12월 17일 : 인권단체들, 집시법 개악안, 테러방지법안, FTA 비준안, 파병동의안의 통과 반대 표결 촉구하는 서한을 국회의원들에 전달

2003년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 운동 평가

2003. 12. 20 이주영

1. 테러방지법 입법 추진의 맥락

- 1) 각국의 정보·수사기관들은 9.11을 '테러방지/대응'을 명목으로 자신들의 권한을 강화할 수 있는 기회로 활용하고자 했다. 여기서 국정원도 예외가 아니었다.
- 2) 냉전 시대에 서방의 정보기관들이 자신들의 존립근거를 '반공주의'에서 찾았다면, 냉전이 종식되자 그 자리를 '반테러'로 대체하고 있다.
- 3) 세계적 차원의 불평등 심화, 인종주의, 군사주의의 심화 등에 대한 절망적 몸부림의 차원에서 비국가 행위자의 테러가 끊이지 않는 상황이다. 테러의 표적이 되는 국가들은 물리적 통제력을 높임으로써 테러에 대응하고자 하고, 이는 다시금 테러를 불러옴으로써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 4) 위에서 밝힌 세 가지 맥락 이외에, 우리나라 국정원의 경우 국내 보안업무의 축소 등 개혁 작업에 대응해 조직 보존 및 확대를 꾀하고자 하는 의도가 있다.

2.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 운동의 문제의식

1) 테러방지법안은 국정원의 권한을 확대하는 법안이다. 국정원의 권한 확대는 자유권의 축소를 필연적으로 동반한다.

테러방지법에 따르면, 국정원 산하에 설치되는 테러대책센터는 각 행정기관의 대테러활동을 기획, 조정하는 권한을 갖게 되고 '테러방지'를 빌미로 내외국인에 대한 감시체제가 강화된다. 사상과 표현의 자유, 결사의 자유의 문제, 민주주의의 문제이다.

○ 국정원, 무엇이 문제인가. 국정원은 비밀정보기관이다.

① 비밀정보기관은 정치적 반대자를 자의적으로 내부의 적으로 설정해 감시, 통제할 뿐 아니라 (정권안보), 자신의 존립근거를 확보하기 위해 끊임없이 가상의 적을 창출하며 사회에 안전에 대한 위기감을 주입하기도 한다.(조직안보)

② 비밀정보기관은 개인의 행동을 사전에 규제해 기본권의 행사를 포기하도록 함으로써 그 사회 내에서 민주적 의사 형성을 가능케 하는 밑바탕을 위협한다.

③ 정보기관은 비밀스런 구조, 비밀스런 정보수단과 방법(합정, 도청, 사찰, 프락치 등)이 불가피한 것으로 여긴다. 비밀주의는 투명성을 운영원리로 삼는 민주주의와는 상충할 수밖에 없다.

④ 정보기관과 집행기관의 권한이 하나의 국가기구에 집중될 경우 자유권은 늘 위협당한다. 국가의 권력을 다른 임무와 권한을 갖고 있는 여러 기관에 분산시켜야 한다.

3.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 운동 경과 (2003년에 대해서만 간략히 정리함)

1) 테러방지법안(합승회 등 민주당안), 국회 정보위에 상정 (8월~11월 14일)

① 인권, 사회단체들, '테러방지법제정반대공동행동' 결성, 토론회, 기자회견, 집회 개최, 언론기고, 성명 발표 등 입법 반대 여론화 노력

② '공동행동', 국회 정보위원회 소속 의원들 만나 입법 반대 의견 전달 / 국회 공청회 참가

③국가인권위원회, 유엔난민고등판무관실 등 테러방지법안에 대한 반대 의견 국회에 전달

2)테러방지법안(3당 소속 의원 발의), 국회 정보위 통과 (11월 14일~11월 30일)

①'공동행동', 테러방지법안의 국회 심의 중단 촉구 시위/매주 국회 앞 집회

②'공동행동'의 국회 대응

-국회 정보위 의원들, 반인권 의원으로 선포함

-열린우리당 항의 방문 및 법안 반대 입장 표명 촉구

-법안에 대한 국회의원 찬반 의견 질의 및 국회 내 반대 의견 모음

③'공동행동', 국정원장 및 청와대 항의 방문

④대한변협, 테러방지법안 반대 의견 제출 / 법무부, 테러방지법안 반대 입장 표명

⑤'공동행동', 언론 기고, 방송 토론 참석

⑥국정원장, 고위 간부 10여명 데리고 테러방지법안의 연내 입법 처리 촉구하기 위해 열린우리당 방문

3)이라크 현지에서의 한국인 노동자 피격 사망 사건(11월 30일~12월 ~)

①정부, 대테러대책위원회에서 국회에 테러방지법의 연내 조속한 제정을 협조 요청하기로 함.

②법사위 심사안 마련됨(국정원이 제출한 수정안을 토대로)

③파병반대, 집시법 개악 저지 등 다른 사안들과 연대해 집회, 법사위 의원실 방문 등 입법 반대 행동 전개

4. 평가 : 아직 진행 중인 활동이기 때문에, 총괄적인 평가를 하기에는 이르다.

1)성과

①국정원의 권한 확대나, 아니냐의 쟁점을 사회적으로 여론화시키는 데 어느 정도 성공했다.

②테러방지법은 반인권, 반민주 악법이라는 인식이 운동 사회 내에서 뿌리를 내렸다.

③직접적인 인권침해 조항으로 꼽히던 내용 중 몇몇 부분이 법안에서 제거되거나 수정됐다. (예 : 벌칙조항, 대테러센터 공무원의 사법경찰권한, 동원된 군 병력의 역할 축소 / 그러나 국정원 산하 대테러센터 설치와 군 병력의 동원 그 자체가 갖는 문제들은 여전하다. 테러방지법 반대 운동의 초기부터 가장 본질적인 문제로 지적됐던 부분만 남은 상태다.)

2)한계

①고전적인 어려움 : 안전을 위해서라면 정보기관에의 권한 집중의 위험성 같은 것은 부차적이라는 인식과 정보기관의 권한을 강화하면 국가안보도 강화될 것이라는 신화 두 가지를 모두 극복해야 하는 어려움. 이라크 파병과 관련해 테러의 가능성이 보다 현실적으로 다가오면서, 이러한 어려움은 더욱 커진다.

②고영구 씨가 국정원장이라는 사실이 정보기관의 반민주적 속성, 테러방지법의 위험성을 가리우는 역할을 하고 있다.

③정보기관의 민주적 통제 내지 해체와 관련, 운동사회 내에서 전문적으로 연구하거나 활동하

는 사람 및 단체가 거의 없다.

④테러방지법 제정 반대 운동이 지향하는 것은 법안 처리를 저지하는 것을 넘어, 국정원에 대한 민주적 통제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공세적으로 나아가는 것이었다. 그러나 위에서 말한 조건 속에서, 우리의 활동은 법안 처리 그 자체를 막기 위한 대응에 급급한 형편이다.

5. 테러방지법 입법 저지 운동 이후의 과제들

1)정부의 반테러조치들을 감시하는 일

2)정보기관에 대한 민주적 통제 방안에 대한 집중적 연구와 활동을 할 수 있는 단위가 있어야 한다.1)

①중정, 안기부, 국정원 등 정보기관에 의한 인권침해의 연보를 정리해야 함.(수사과정에서의 인권 침해, 감시·사찰 등)

②국정원의 수사권을 삭제하고 해외 정보 수집으로 역할을 국한시킴(최소한의 합의를 지점)

③국정원의 정보수집 관련 통제 장치를 보다 엄격히 함.

-정보수집의 목적, 대상, 방법에 대해 구체적이고 명확한 기준 마련.

-국정원법이나, 정보공개청구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혹은 별도의 법률을 통해 정보기관의 정보수집권 남용에 대항하는 시민의 권리를 보장해야 함. (사찰여부 확인, 사찰기록 공개, 부당한 사찰 중지, 사찰기록 폐기 등) 현재 일부에서 추진 중인 프라이버시보호법이나 프라이버시보호위원회라는 틀의 가능성도 검토해봐야 함.

④국정원의 해외 정보 교류의 실제 및 방법 등을 공개토록 해야 하며, 이 부분에 대한 감시가 필요하다.2)

④국정원의 비밀주의를 예외의 경우로 제한하고, 의회나 대중에 의한 통제를 보다 강화해야 함.

-자료 열람권, 질의권, 국정원 시설에 대한 출입권의 문제, 예산과 조직인원, 정보수집 방법 사용 실태에 대한 보고의 의무

3)국가안보 이데올로기와 정보기관에 대한 물신 극복하기

1) 이 내용은 97년 안기부법 개악 철회 투쟁 과정에서도 이미 논의된 바 있으나, 6. 7년이 지나도록 별다른 진전을 보이지 못한 것들이다.

2) 이것은 올해의 테러방지법 입법 반대 투쟁 과정에서 새롭게 문제의식을 갖게 된 부분이다.